

## ■ 최신 법령 ■

## 최저임금법 일부개정

## 1. 주요 내용

현행 최저임금법은 3개월 미만 수습 근로자의 경우, 업무를 배우는 기간이므로 최저임금액 보다 감액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

개정안은 단순 노무 업무의 경우 기능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을 감액지급할 필요가 없으므로,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는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하였습니다.

## 제5조(최저임금액)

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. 다만,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.

2. 다운로드 : [최저임금법 일부개정\(2018. 3. 20. 시행\)](#)